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8

발의연월일: 2020. 9. 18.

발 의 자: 박재호·강병원·장경태

오영환 • 윤건영 • 홍성국

허 영・송재호・윤재갑

이용우 · 유정주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곤란함. 또한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하여도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 시 수급자에 대한 투약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5조, 제36조의2, 제67조및 제69조).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 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 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 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 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 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수급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 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 제61조제2항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노인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 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35조제4항 중 "자료를 기록"을 "자료(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포함한다)를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가 제4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수급자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4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수급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의2 중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 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 2.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 2.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1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 인을 거부한 자

제6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 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록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u><신 설></u> <u>제</u>	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전과 장기요양기 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 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

 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 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 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의 안 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 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

 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 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

<신 설>

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 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 · 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수급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 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요청하는 경우
-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 제61조제2항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 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노인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 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실태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 ③ (생 략)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 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를 기록-----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 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구	<u>구정된</u>
것을 제외하고는 「개역	<u> </u>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	다)을
적용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자료(투 약 등의 치료 내용을 포함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가 제4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 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 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의 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수급자의 동의서 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4항에

⑤ ~ ⑦ (생 략)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u>장기요양기관 재</u> 무·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 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법률 제17173호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 급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수급자 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 제36조의2(시정명령)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나에 해당하는----

-----.

-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 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벌칙)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 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 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 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 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 2.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 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저 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 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 1. (현행과 같음)
- 2.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3.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 4. (생 략) ③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2 2
<u> 손당한 자</u>
3. ~ 5. (현행과 같음)
<u>③</u>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세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
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
한 자
 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
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한 자
<u>원 기</u> ③ 제1항 및 제2항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u>